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7
------	-----

발의년월일 : 2000. 2. 16.  
발의자 : 최상귀의원외 3인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동법시행령('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 정례회기간 중 처리할 안건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매년 1회 개최의 정기회를 매년 2회 개최의 정례회로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로, 2차 정례회는 12월 7일 집회함(안 제4조)
-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함(안 제5조)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기획 13131-39)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7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

우 360 - 765 청주시 문화동 89 / 전화 (0431) 220 - 2771 / FAX 220-2119  
기획관실 / 기획관 이석표 / 의회협력담당 최정옥 / 담당자 윤상기

문서번호 기획 13131 - 3)  
시행일자 2000. 1. 17

(공개여부)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찰 조

선 람	국장 이득호	지 시	의장	이득호
접 수	일자 시간	2000. 1. 19	결 재 공 람	부의장 국장 의장 전운하원 담당자
번 호	78			이득호 2000. 1. 19 2000. 1. 19
처 리 파	의회사무국			
담 당 자				
실 사 자			실 사 일	

### 제 목 :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 이첩통보

- 행자부 운영 13130-27(2000. 1. 10)호와 관련입니다.
- 지방자치법('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동법시행령 ('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조례의 제정·공포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 1부 풀.

충 청 북 도 지



수신처 : 010-11(의회사무국·과장, 기획감사(홍보·예산)실장)

##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5일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 각급 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수요, 기타 지방 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설정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규정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행정사무감사 회기일수(시·도 : 10일이내, 시·군·자치구 : 7일이내)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결산서 작성기한(출납과세후 80일이내)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
- 지방자치법 제118조  
- 예산안 편성기한(시·도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 예산안 의결기한(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개정안 제38조(2000.1월중 공포예정)  
- 출납과세기한(회계연도 종료후 2월) 및 결산서 제출기한(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결산서 제출기한 :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도록 개정계획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례회제도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 행	개 정 안	헌 행	개 정 안
<p>第38條(定期會) 地方議會의 定期會는 市·道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集合된다. 다만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集合한다.</p> <p>例會(開會·休會·閉會과 會議回數) ①(상 라)</p> <p>②定期會의 會期는 市·道議會의 경우 40日이내,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경우 35日 이내로 하고 例會의 會期는 15日 이내로 한다.</p> <p>③年間 會期總日數는 定期會 및 例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20일,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第38條(定期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회의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期會는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이 편리이 필요한 사항은 大新 領會이 치하는 바에 의하여 담해 地方自治團體의 例會로 치한다.</p> <p>例會(開會·休會·閉會과 會議回數) ①(헌행과 같음)</p> <p>②定期會의 會期는 年 2회를 합하여 -----.</p> <p>③----- 定例會 -----.</p>	(신설)	<p>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충선기가 실시되는 인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신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편리이 필요한 사항은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200			

## 전 언 통 신 문

1. 일 시 : 2000. 2. 1. 10:30
2. 송 화 자 : 신 회 섭(지방행정9급)
3. 수 화 자 : 최 민 수(국회의정연수원 부이사관)
4. 내 용 :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 질문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정례회 제도 운영조례준칙안중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 월 ○ 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 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에서, “총선거”의 개념은?
- 답변 : 본 사안에서 말하는 “총선거”란 지방의회의 원총선거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궐선거등은 제외된다고 봄. 끝.

13/30 ~ 36  
3  
2001. 2월 1일

3장  
2001. 2월 1일

(全文改正 94·3·16)

第37條 (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球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答辯하지 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③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한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관계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

第37條의2 (議會規則) 地方議會는 會議 기타 内部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3·16)

#### 第4節 召集과 會期

第38條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每年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9·3·31)

第39條 (臨時會) ①總選舉 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條 (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중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條 (開會·休會·閉會과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과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定例會의 會期는 年 2回를 合하여 市·道議會의 경우 40日이내,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경우 35日이내로 하고, 臨時會의 會期는 15日이내로 한다. (改正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91·12·31, 94·3·16, 99·8·31&gt;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4·3·16, 99·8·31>

## 第5節 議長과 副議長

第42條 (議長·副議長의 選舉와 任期) ①地方議會는 議員중에서 市·道의 경우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각 1人을 無記名投票로 選舉하여야 한다.

②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43條 (議長의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會의 專務를 監督한다.

第44條 (議長의 委員會 출석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45條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46條 (臨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47條 (補闕選舉)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關位된 때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한다.

②補闕選舉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48條 (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第42條第1項·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를 실시하는 경우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中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49條 (議長不信任의 議決)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議決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不信任議決은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改正 94·3·16>

③第2項의 不信任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改正 94·3·16>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 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  
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죠례로 정한다.

이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4.7.6, 95.7.1>  
(본조신설 92.2.15)

제20조의3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어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1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총기 또는